|  |  |  |
| --- | --- | --- |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수입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세위회[2016]24호해관총서 :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 양허표 수정안>(이하 '<수정안>')이 국무원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비준을 득하였다. <수정안>의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그 별표에 열거된 정보기술제품의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득한 후 15일 내에 1차 세율 인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를 거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 2016년 9월 15일부터 <수정안> 별표에 열거된 수입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에 대하여 1차 세율 인하를 실시한다.2. 1차 세율 인하를 실시하는 구체 품목의 세율은 이 통지의 첨부에 따른다.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2016년 9월 9일  첨부 다운로드 : 정보기술제품 최혜국세율표<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9/P020160914521015785732.pdf> |  |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部分进口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的通知**税委会〔2016〕24号海关总署：　　《中华人民共和国加入世界贸易组织关税减让表修正案》（以下简称《修正案》）已经国务院审核同意，并于2016年9月3日经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决定批准。根据《修正案》的相关规定，应逐步取消其附表所列信息技术产品的进口关税，且在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后15日内实施首次降税。经研究，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自2016年9月15日起，对进口《修正案》附表所列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实施首次降税。　　二、实施首次降税的具体税目税率详见本通知附件。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2016年9月9日  附件下载: 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表<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9/P020160914521015785732.pdf>　　　 　　 |